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재처분 상한 설정〉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836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개요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제재처분 상한 설정	2

I. 개요

2025년 3월 12일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재처분 상한 설정

개정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조업정지명령) ----- ----- -----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

현행법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폐수배출시설 사업자에게 개선명령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조업정지²⁾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물환경보전법」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2) 「물환경보전법」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업정지의 기간은 법률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이 제정('21.3.)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기본법」 제22조제1항3)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되,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제재처분의 상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행정의 예측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서는 동법 다른 조항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업정지 명령 상한과 유사하게, 조업정지 명령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을 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6개월까지 처분이 부과되는 사례는 없는 실정임.

3)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상한과 실무에서 적용되는 기준 간에는 일정한 괴리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상한을 6개월로 규정하더라도 실제 행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는 다소 크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법률상 상한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과 행정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22]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장 조업정지 기간을 20일로 두고 있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폐수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2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5일

나)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이하 생략)					

문 의 처
02)6788-5546